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10.30.(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수사의뢰(DAXA, 3건) 및 접속차단(2건) 요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이형주, 이하 'FIU')은 금일 오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가 수사의뢰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건(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중 **2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에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앱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가상자산업을 위한 웹사이트, 모바일 앱이 없어 접속차단 불요
**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는지에 따라 이용해지(국내) 또는 접속차단(해외) 조치를 부과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여야 한다.

*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율·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해킹·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

* '26.6월 DAXA, 신고 사업자 합동 집중조사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으로 조사

이번 수사의뢰 및 접속차단* 요청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불법 영업사이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실제 접속차단은 방미심위의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

앞으로도 **방미심위, DAXA**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신고 사업자 명단 및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 **명단의 공개·안내 강화** 등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유의사항 >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는 **사기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 등에 제보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붙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

담당 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책임자	과 장	안남기 (02-2100-1711)
		담당자	사무관	김세화 (02-2100-1713)
			사무관	이상민 (02-2100-17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수사의뢰 명단(47개)**

□ 아래 명단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로, 수사기관에 통보되었으며, **이용** 및 **거래**에 **주의** 필요(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 취급업자"일 수 있음)

연번	사업자명	수사기관 통보일
1	Kucoin	'22.8.17.
2	MEXC	
3	Phemex	
4	XT.com	
5	Bitrue	
6	ZB.com	
7	Bitglobal	
8	CoinW	
9	CoinEX	
10	AAX	
11	ZoomEX	
12	Poloniex	
13	BTCEX	
14	BTCC	
15	DigiFinex	
16	Pionex	
17	APPLE BIT	'23.1.13.
18	Blofin	'23.7.12.
19	Apex Pro	
20	CoinCatch	
21	DOEX	
22	WEEX	
23	BitMart	
24	KCEX	'25.8.7.
25	QXALX	
26	코인니스(Coinness)	'25.8.22.
27	다윈케이에스	'25.9.22.
28	BingX	'26.1.12
29	P2B	'26.6.10.
30	Walbi	
31	Nonkyc.io	
32	SUPEREX	
33	비트프록시	
34	코인솔루션	
35	오박코인	
36	신밧드솔루션	
37	펄스플로우	
38	비트코인프록시	
39	페이솔루션	
40	Xgram	
41	탭비트	'26.8.31.
42	코인마이	
43	빅원	
44	유비트	
45	이지스벤처스*	'26.10.30.
46	테더맥스	
47	슈퍼트러스트	

* 미신고 가상자산업 영위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이 없어 접속차단 불요